

##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(예시)

○ 위임인 (“갑”) : 윤한일

○ 수임인 (“을”) : 손해사정도무

“갑”과 “을”은 아래 대상사건의 보험업감독규정 제9-16조 제2항 제1호를 활용한 실손의료비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
### 대 상 사 건

보험회사	메리츠화재
병원	서울더남성의원
치료시작일	

### 다 음

**제1조(업무의 위임내용)** “갑”은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“을”에게 위임한다.

1.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
2.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
3. 손해액 또는 보험금 사정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·제출의 대행
5.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 진술

**제2조(동의요청)** ① “을”은 201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 대상사건 기재 보험회사에 대하여 “갑”을 대리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제9-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때 별첨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“갑”이 직접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“을”은 보험회사가 산정한 보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고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제1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회신을 수령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“갑”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“을”은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손해사정에 착수할 수 없다. 보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.

**제3조(업무의 수행)** ①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신속,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손해사정 진행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언제든지 “을”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“을”은 손해사정업무 완료 시 손해사정서를 “갑”과 보험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. 보험회사의 보정요청이 있어 보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같다.

**제4조(보수)** ① “을”은 손해사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“갑”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면책처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1항의 보수를 청구함에 이의하지 않는다.

③ “을”은 이 계약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 외에 어떠한 보수도 “갑”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④ “을”이 손해사정에 착수한 이후 “갑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위약금을 정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자료의 제공 및 협조)**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“갑”은 허위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6조(수임인의 지위)** “을”은 손해사정사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계약의 효력상실)**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은 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.

1. 제2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2.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의한 후 보험회사와 보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
3. 보험회사가 이미 손해사정에 착수한 경우 (타당한 경우에 한함)

**제8조(계약의 해지)** ①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고 보수에 이의가 없음에도 즉시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
2. “을”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②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갑”이 제2조에 따른 동의요청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“갑”이 제5조에 따른 정보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

**제9조(준용규정)**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 : 상법, 민법 등 관계 법령
2.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: 보험업감독규정,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, 금융위원회의 「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」 및 그에 따른 각 보험회사의 내부 규정

2026 년 2 월 3 일

위임인 성 명 : 윤한일 (인) 당사자와의 관계 : 본인  
주민번호 : 550510 - 1090716 핸드폰 : 010-9337-8434  
주 소 : 부산 사하구 장평로125번길 75 (장림동)

당사자 성 명 : 윤한일 주민번호 : 550510 - 1090716

수임인 업 체 명 : 손해사정도무  
주 소 : 부산 사하구 장평로125번길 75 (장림동)  
대 표 자 : 김도무



## (손해사정사 선임을 위한 필수동의서)

※ 귀하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### 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? ..... 동의함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, 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(초)등본, 계좌정보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경찰·검찰·법원·소방서·주민센터·근로복지공단·국민연금관리공단·건강보험공단·세무서·보험회사·공제조합·의료기관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(단체, 법인 포함)에서 발급한 각종 조사서·판결문·증명서·진료기록·진단서 등 일체의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, 기타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
-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이 종료되는 날까지

### 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? ..... 동의함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생명보험사·손해보험사·재보험사·공제사업자·체신관서 등 보험금(공제금)을 지급하는 자, 보험계약자·배상책임자 등 사고관련자,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, 손해사정업체·변호사·법무법인·의사·의료기관 등 업무수탁자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, 법률자문·의료자문 등 손해사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
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위해 필요한 정보, 손해사정서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

### 3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상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(질병·상해정보 등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등)를 처리(수집·이용·조회·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?

민감정보 처리 ..... 동의함   
고유식별정보 처리 ..... 동의함

2026 . 2 . 3 .

동의자 성명 : 김도무

(인  서명)

## 선임동의 요청서(보험회사 제출용)

수임인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-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도무 에 위임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요청합니다.

**1. 보험계약**

피보험자	윤한일	생년월일	1955.05.10
상품명		증권번호	

**2. 치료내역**

병원·과목	서울더남성의원	기간	
치료이유	전립선증식증		

**3. 체결 혹은 체결예정 손해사정위임계약**

위임인	윤한일	생년월일	55.05.10	관계	본인
-----	-----	------	----------	----	----

**4. 선임 혹은 선임예정 손해사정업체**

업체명	손해사정도무	업등록번호	528-09-02381
영위종목	손해사정업		
담당 손해사정사	김도무	담당 보조인	송여은
형사처벌 이력 <sup>1)</sup>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감독기관 제재이력	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교육이수	최근 2년 내 1 회 30 시간		

**5. 동의 수령방법**

위임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
수임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SMS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

**6. 통보위임**

위임인	성명 윤한일 주소 부산 사하구 장평로125번길 75 생년월일 1955.05.10	
수임인	업체명 손해사정도무 주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92, 1103호 대표자 김도무	

※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, 수임인의 업등록증 사본 첨부

1) 최근 7년 내 보험업법 위반, 보험사기방지법 위반, 형법 중 사기 관련 죄, 변호사법 위반에 한 함